

정책보고서 2001-02

출자총액 재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1. 5. 9

본 자료는 본원의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 발표자료를 법경제연구센터 황인학 선임연구
위원이 편집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자료문의: Tel 3771-0029 Fax 785-0273

<목 차>

<요 약>	1
1. 문제제기	10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10
2) 제도현황 및 기업의 부담	11
2. 재규제의 배경과 공정위의 논리	14
3. 출자총액 재규제 논리 비판	16
1) 내부지분을 증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적 변화인가?	16
2) 출자규제제도의 폐지가 계열확장을 수반했는가?	19
3) 출자총액규제 논리, 어느 정도 타당한가?	20
4) 규제의 실효성,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21
5) 정책방향의 상충 등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	23
6) 출자 재규제로 예상되는 장·단기 부작용	24
4. 개선과제	27
1)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27
2) 출자규제의 폐지 또는 일본과 같은 규제수위로 정책을 재조정	27
3) 차선의 대안으로는, 출자한도 초과분의 단계적 해소 유도	28
4) 차별적 대기업정책 운용방식에서 탈피	29
<부표 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	32
<부표 2>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예의 규제내용	33

<표 차례>

<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12
<표 2> 1995년 도입된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회사)의 요건	13
<표 3>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및 출자비율 변동 현황	14
<표 4> 그룹 규모별 출자총액과 한도초과액	14
<표 5> 30대 그룹의 소유구조 및 출자비율 변동 추이	15
<표 6> 30대 재벌의 부채비율 변동 추이	17
<표 7>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1998-1999년)	17
<표 8>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감내역(1999-2000년)	19
<표 9>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수 변화추이	20
<표 10>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1년 시한 내 해소 전망	25
<표 11>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방법	25
<표 12> 출자총액규제의 한·일간 비교	28
<표 13> 30대 기업집단 관련 이동지표	30
<표 14> 경제력집중도와 편중도의 변화 추이	31

【요 약】

(1) 換亂 이후 재벌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경영전략적 판단사안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인 정책개입을 추진
 - 환란 이후 정부는 재벌을 개혁하겠다고며 ‘5+3’ 원칙 하에 수많은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정부정책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내부통제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 등의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책적으로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정부가 처음부터 줄곧 주창하였던 ‘시장경제원칙’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특히 정부가 재벌을 개혁하겠다고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변수에 대해 과도하고 획일적인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강제함으로써 정책의 악순환을 낳고,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및 사업구조에서 조직형태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영전략변수에 대한 과도한 비율정책의 예시
 - 영위업종의 차이를 불문하고 단기간 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정책운용으로 인해 결국 자금시장 경색과 주식시장 위축을 초래

- 시장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내부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비율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는 정책개입을 단행
-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라는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내부지분율이 증가했으나 정부는 이를 이유로 '98년 2월에 폐지하였던 출자규제를 금년 4월부터 재도입, 한도초과분은 내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함. ⇒ 과도한 비율정책의 악순환

(2) 출자총액규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재규제와 기업의 부담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국내기업의 제도적 역차별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1998년 2월에 폐지하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자 이를 이유로 2001년 4월부터 출자총액규제를 다시 도입함.
-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출자규제내용은 순자산의 25%를 규제상한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지난 '95년의 제도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만 현 제도는 구 제도와 달리 소유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구 제도보다 규제의 강도가 훨씬 엄격함.
- 2000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율은 32.9%로서 내년 3월 말까지 주식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할 출자초과분은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약 2/3 가량(19

개 그룹)이 1년 내에 초과분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해소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출자 재규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출자총액 재규제의 문제점

① 정책방향 및 정책운용기준의 일관성 결여

- 정책방향: '87년 규제도입 → '98년 폐지 → 2001년 재규제
- 운용기준: 소유분산우량기업과 SOC 민간출자 등에 대한 구 제도와 신 제도간 규제 기준 상이

② 재규제 논거의 타당성 · 환경적합성 결여

- 내부지분을 증가하는 단기간 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임.
- 지금의 제도적 여건과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15년전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가? (공정거래연보 1994년판, pp.35-36 참조)

③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1998년~2000년 기간 중 30대 그룹의 평균 영위업종수는 20.0개에서 15.3개로 오히려 감소

④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및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 출자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되며 우리의 25% rule은 일본 (100% rule)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임.

⑤ 정상적인 경영활동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저해

-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타회사 출자는 5년간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한이 '98. 1. 1~2001. 3. 31까지로 제한됨으로써 2001년 4월 1일 이후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⑥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

- 30대 그룹은 해소대상 출자초과분의 약 65%(9조원)를 주식매각이나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물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⑦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잠식 우려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이 여전히 문제인 상황에서 출자규제는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현행의 출자규제제도는 출자액 산정시 순자산은 장부가, 출자총액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결과 경기침체기에는 출자비

율이 기술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 때문에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경기침체에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개선과제

- 과거에는 대기업의 출자를 생산적 관점이 아닌, 지배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지난 3년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대폭적 개선과 함께 투자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경영감시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비생산적인 지배목적의 출자는 투자자와 시장에서 충분히 견제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출자 및 신규 투자에 관한 결정은 이제 기업(기업가와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 무국경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정책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야 할 것임.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100억엔(자본금) 또는 300억엔(순자산)이 넘는 기업에 대해 100%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도 출자규제를 다시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 수준으로 규제수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기업정책의 문제점과 세계화 과제

- 글로벌 스탠다드, 자원배분효율의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대기업정책의 지속
- 우리나라 대기업정책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1987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고시제도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출자총액규제도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음.

- 동 제도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30대 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규제, 지주회사 설립의 엄격한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 이 밖에 30대 그룹은 금융(은행법, 보험법 등), 세법(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산업법 등 총 2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음.
- 다른 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절감되는 것은 방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진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투자와 규모 팽창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임.

- 대기업정책의 개념적 기반으로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문제

- 정책당국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시장개방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선진 대기업과 국경을 넘어서 무한경쟁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언제까지 한국적 특수성을 거론하며 우리 나라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 경제력집중억제논리에 기초한 대기업 정책은 전체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논리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열린 경쟁의 시대적

환경, 기업정책의 세계적 수렴 추세와도 배치되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구속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임.

- 예를 들어, 1987~2001년 동안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 프로그램 하에 종합적인 관리의 대상이었던 30대 그룹 중 약 절반 가량이 쇠락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의 우려와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해도 독과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없음을 반증하는 한편, 전통적인 대기업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음.

- 대기업정책의 세계화 과제

- 경제논리, 글로벌 경쟁환경,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제반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대기업정책의 기조도 전통적인 경제력집중억제논리에서 벗어나 시급히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시점임.
- 이제는 투자자에 의한 경영자규율이 용이해진데다 환란 이후 도입된 주채무계열제도 하에서 형식적으로는 대기업의 재무구조, 사업구조,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해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판단사안에 대해서까지 정책적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과 조화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시정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대기업정책 운용 틀을 적극적인 경쟁촉진의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고시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자산규모 5조원대 이하의 그룹(15개)과 40조원 이상의 그룹(4개)을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므로 과도기적으로라도 현행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4~5대 그룹으로 축소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5대 그룹의 비중(CR₅): 1987년 64.7% → 2001년 72.1%

1. 문제제기

-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 2) 제도현황 및 기업의 부담

2. 재규제의 배경과 공정위의 논리

3. 출자총액 재규제 논리 비판

- 1) 내부지분을 증가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적 변화인가?
- 2) 출자규제제도의 폐지가 계열확장을 수반했는가?
- 3) 출자총액규제 논리, 어느 정도 타당한가?
- 4) 규제의 실효성,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 5) 정책방향의 상충 등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
- 6) 출자 재규제로 예상되는 장·단기 부작용

4. 개선과제

- 1)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 2) 출자규제의 폐지 또는 일본과 같은 규제수위로 정책을 재조정
- 3) 차선의 대안으로는, 출자한도 초과분의 단계적 해소 유도
- 4) 차별적 대기업정책 운용방식에서 탈피

<부표 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

<부표 2>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 규제내용

1. 문제 제기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 당초 제도 도입과 취지(1986년)

-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겠다는 목표 하에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1986년 12월)에서 1987년 4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 대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함. 동 제도는 국내 타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공자본의 증식을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 하에 도입되었고, 당초 출자총액한도는 순자산액의 40%로 설정되었으나 제4차 법개정시(1994년 12월) 25%로 축소됨.

- 제도 폐지와 배경(1998년)

- 동 제도는 외환위기 발생 후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8년 2월(제6차 법개정) 폐지됨.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감독 강화, 외국인투자 자유화,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 등 다양한 개혁의 추진으로 기업의 차입금융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어려워지는 한편 출자규제로 인해 기업인수·합병, 자산거래, 사업교환 등 기업구조조정이 제약되고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사업전략 등이 차별적으로 제약받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그리고 재도입(1999년)

-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공정거래법 제8차 개정(1999년 12월)에 의해 폐지 3년만에 다시 시행되어 1999년 8월에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축소’가 재벌개혁의 주요과제로 제시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 2001년 4월부터 출자총액규제를 재시행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것임.

2) 제도현황 및 기업의 부담

- 규제내용

- 현행의 출자총액 한도는 종전처럼 순자산의 25%로 설정되었고, 금융·보험업 영위회사와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한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음 (<표 1> 참조).

<표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예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소유하는 경우(1년) -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6월) •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1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에의 출자(예외인정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되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예외인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신설 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 30% 미만의 출자 등 • 외국인투자의 유치 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예외인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 이상,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 미만의 출자

자료: 신광식(2001), 『財閥改革의 政策課題와 方向』, 한국개발연구원

- 新·舊 제도의 비교

-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제도에서는 '95년의 구 제도와 달리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규제 적용배제를 두고 있지 않음.

<표 2> 1995년 도입된 소유분산 우량기업집단(회사)의 요건

	내 부 지 분 율	자기자본 비 율	기업공개 비 율	비고
소유분산 우량 기업집단	20% 미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10% 미만)	20% 이상	60% 이상 (자본금 기준)	'95년
	전체 25% 미만 동일인 등 지분 5% 미만			'97년
소유분산 우량회사	15% 미만 (동일인 특수관계인 8% 미만)	20% 이상	상장회사	'95년
	전체 20% 미만 동일인 등 지분 5%	25%	상장회사	'97년

- SOC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는 구 제도 하에서 적용제외 사안이었으나 신 제도하에서는 예외인정 사안으로 규제의 강도가 한층 높아짐.
- ‘예외인정’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은 범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일 뿐 출자액 자체는 출자총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추가출자를 위해서는 한도초과액(SOC 출자 포함) 중 일부를 먼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SOC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재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2000년 4월 기준,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은 약 20조원이며 이중 예외인정 대상 출자분은 약 30%(6조원)임.

<표 3>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및 출자비율 변동 현황

구 분	'97.4	'98.4	'99.4	2000.4
출자총액(A)	16.9조	17.7조	29.9조	45.9조
순 자 산(B)	61.3조	59.2조	92.0조	139.6조
출자비율(100×A/B)	27.5%	29.8%	32.5%	32.9%

자료: 공정위

- 이에 따라 한도초과분의 해소시한인 내년 3월 말까지 주식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30대 재벌이 해소해야 할 금액은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그룹 규모별로 출자한도 초과액을 보면, 1~5대 그룹이 12.1조원, 6~30대 그룹이 약 7.7조원에 이룸.

<표 4> 그룹 규모별 출자총액과 한도초과액

(단위: 조원)

	1~5대 그룹	6~30대 그룹	30대 전체
출자총액	31.2	14.7	45.9
한도초과액	12.1	7.7	19.8

자료: 공정위, 2000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2. 재규제의 배경과 공정위의 논리

- 재규제 배경: 내부지분율의 급증

- 1998년 2월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된 후 출자비율은 27.5%(1997년)에서 32.5% (1999년)으로 증가하였음.
- 이와 함께 동일인 지분은 급감하였으나 계열사간 출자의 증가로 인해 내부지분율은 급등하게 됨 (<표 5> 참조).
 - 동일인 지분: 1997년 8.5% → 1999년 5.4%
 - 내부지분율: 1997년 43.0% → 1999년 50.5%
- 이에 따라 출자규제의 폐지로 총수 중심의 계열구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면서 1999년 8월 15일 대통령이 재벌개혁의 추가적인 조치로 ‘순환출자의 금지’를 천명하게 됨. ⇒ 공정거래법 제8차 개정 (1999년 12월)에서 출자총액규제를 재도입

<표 5> 30대 그룹의 소유구조 및 출자비율 변동 추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출자비율(%)	28.0	26.8	26.3 ¹⁾	24.8 ²⁾	27.5	29.8	32.5	32.9
출자금액(원)	8.2조	9.7조	11.3조	13.6조	16.9조	17.7조	29.9조	45.9조
내부지분율(%)	43.4	42.7	43.3	44.1	43.0	44.5	50.5	43.4
가족	10.3	9.7	10.5	10.3	8.5	7.9	5.4	4.5
계열사	33.1	33.1	32.8	33.8	34.5	36.6	45.1	38.9

주: 1) 소유분산우량회사(6개사) 제외시: 출자비율 24.7%

2) 소유분산우량회사(9개사) 제외시: 출자비율 23.7%

- 공정위의 재규제 논리¹⁾

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99.9.

- ① 출자규제 폐지 후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발생하며,
- ②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가 없는 부채비율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③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역량 집중에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3. 출자총액 재규제 논리 비판

1) 내부지분율 증가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적 변화인가?

- 내부지분율 급증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적 변화인가, 아니면 정부 주도의 단기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인가?
 - 내부지분율 증가는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 압력** 하에 실시한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참여, 부실기업 인수 등에 기인하며 따라서 재벌의 체계적인 계열 확장 행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998~1999년 기간 중 내부지분율 급증의 제1원인(70%)은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축소)을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

- 일본의 경우, 1985년 350%를 초과했던 제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이 200%로 감소하는 데에 약 10년이 걸렸으나²⁾ 우리나라의 30대 그룹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독려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부채비율을 1997년의 518.9%에서 불과 2년 만인 1999년 말에 216.7%까지, 그리고 2000년 말에는 171.2%까지 축소시켜야 했음 (<표 6> 참조).

<표 6> 30대 재벌의 부채비율 변동 추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무 구조	자기자본비율	22.2	21.9	22.3	20.6	16.1	20.8	31.4	
	부채비율	349.7	355.7	347.5	386.5	518.9	379.8	216.7	171.2
	부채금액(조원)	148.5	174.9	216.1	269.9	357.4	367.0	283.4	265.1

주: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부채금액은 사업년말 및 비금융·보험회사 기준

- 단기간 내에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의한 자기자본 확대가 불가피하였으며, 1998~1999년 출자증가액(12.2조원)의 약 70%(8.2조원)가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출자증가에 기인 (<표 7> 참조)

<표 7>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가내역(1998-1999년)

(10억원, %)

계	유상증자 ¹⁾	주식취득	회사설립	기타
12,267	8,802	2,199	951	316
(100.0)	(71.8)	(17.9)	(7.7)	(2.6)

주: 계열사 신규편입, 기존계열사 주식매입, 비계열사 주식매입 등에서 주식매각을 차감.

2) BCG 보고서, p.62.

- 여타의 출자총액 증가분도 대부분 경제전체의 구조조정 및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 이 밖에 현대의 기아인수 등 계열사 신규편입 및 계열사 주식의 추가 매입으로서 계열편입·제외에 따른 출자총액 증가(1조 1천 6백억원)가 전체 증가분의 9.5%를 점함.³⁾
- 요약하면 1998~1999년 기간 중 출자총액 및 비율의 증가는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유상증자에 대한 계열사의 참여, 부실기업 인수 및 기업의 분할·분사 등 구조조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추세변동으로 보기 어려움.
- 2000년 4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45.9조원으로 전년 대비 53.5% (16조원) 증가하였으나, 이 때는 공정위에서도 경제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총액 증가가 불가피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정위(2000. 4): “출자증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8.2조원), 정보통신분야 참여 및 구조조정 출자에 기인”

3) 1998.4.~1999.4. 중에 30대 재벌의 계열사 수가 804개에서 686개로 줄었음에도 출자총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현대의 기아관련 13개사 인수(9천 5백억원)에 기인한다.

<표 8>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증감내역(1999-2000년)

(단위: 조원, %)

계	유상증자	주식취득 ¹⁾	회사설립	신규지정 · 지정제외	기타 ²⁾
16.0 (100.0)	8.2 (45.6)	7.4 (41.1)	2.2 (12.2)	△2.0	0.2 (1.1)
비 고	유상증자: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참여: 7.0조원				
	주식취득: 주로 정보통신분야 주식취득 및 이들 주식의 추가상승에 기인 예) LG: 데이콤(1.9조), SK의 SK 텔레콤 및 신세기 통신(2.4조)				
	회사설립: 주로 회사의 물적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출자 및 정보통신 관련 회사설립 참여에 기인				

주 1: 계열사 신규편입, 기존계열사 주식매입, 비계열사 주식매입 등에서 주식매각을 차감

주 2: 전환사채(CB) 전환, 합병 등

2) 출자규제제도의 폐지가 계열확장을 수반했는가?

- 출자규제가 폐지된 이후 30대 그룹의 출자총액·비율과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고 하나 이들의 계열사 수는 1998년의 804개에서 1999년 686개, 2000년 544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평균 영위업종수도 감소하고 있음 (<표 9> 참조).
- 특히 1999~2000년 기간 중에도 출자총액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평균 영위업종수는 15.3개로 전년(19.2개)보다 3.9개가 감소하는 등 출자규제의 폐지 이후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의 구조조정이 크게 증가하여 왔음.

<표 9>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수 변화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계열사수	20.1	20.5	20.8	22.3	27.3	26.8	22.9	18.1
평균 영위업종수	18.3 (31.2)	19.1 (30.4)	18.5 (29.6)	18.8 (29.6)	19.8 (30.0)	20.0 (31.0)	19.2 (30.0)	15.3 (25.4)
총 계열사수	604	616	623	669	819	804	686	544

주: 괄호안의 수치는 5대 그룹의 영위업종수

3) 출자총액규제 논리, 어느 정도 타당한가?

- 출자총액규제의 개념적 기반의 문제

- 직접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이 복잡한 순환적 상호출자에 의한 가공적 자본증식을 통해 그룹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순환적 상호출자의 규제 필요성이 주장되고(강철규·최정표 등)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도가 부활됨.
- 그러나 아직까지 재벌들의 순환출자의 패턴 및 이에 따른 가공적 자본증식의 규모나 정도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조사자료나 연구결과는 없음(신광식, 2001).
- 특히 김진방(1999) 등은 5대 재벌의 내부지분 구성에 관한 참여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순환출자가 허용되고 있는 지금에도 5대 재벌은 순환출자에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

- 출자 재규제의 환경 적합성 문제

- 1994년 출자규제비율을 25%로 강화할 당시, 공정위는 출자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 순자산(또는 자본금)의 100%를 한도로 규제하고 예외적용 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우리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한편,
 - 더 나아가 공정위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유효경쟁이 확보되고 채무보증제한제도가 시행되면 업종 다변화는 기업의 고유결정사항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가 필요한 면도 있음을 설명한 바 있음 (공정거래연보 1994년판, pp.35-36).
- 그렇다면 지금의 제도적 환경과 대내외 경영여건을 돌아볼 때, 한때 폐지하였던 7년 전의 출자규제가 과연 필요한 상황인가?
 - 다시 말하면, WTO 출범 이후 초국적 기업(TNE: transnational enterprise)의 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30대 그룹의 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기업지배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함께 투자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경영진 규율기능이 향상된 지금, 1994년보다 한층 엄격한 출자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규제의 실효성,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

- 출자규제가 시행되었던 기간 중에도 3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평균 509

개(1989년)에서 819개(1997년)로 늘었음. 특히 25% 규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계열사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음.

- 계열사수의 증가: 509개(1989년) → 623개(1995년) → 819개(1997년)
- 영위업종수 증가: 11.3개(1989년) → 18.5개(1995년) → 19.8개(1997년)

- 반면에 출자규제가 폐지되었던 1998년~2000년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영위업종수 또한 평균 20개에서 15.3개로 대폭 감소하였음.

- 계열사수의 변화: 804개(1998년) → 686개(1999년) → 544개(2000년)
- 영위업종수 변화: 20.0개(1998년) → 18.5개(1999년) → 15.3개(2000년)

- 1998년 이전의 출자규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 출자총액제한과 같은 총량적·확일적 출자규제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하락 및 그에 따른 대주주 기업가(총수)의 지배권 약화, 그리고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음(신광식, 2001).⁴⁾

- 반면에 1998년 이후의 경험에서 보듯이 출자규제가 없어도 기업들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도 함.

4) 여기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신광식(2001)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순자산액(=자산총계-부채총계-국고보조금-당해 회사에 대한 타계열사 출자금)을 늘려 사실상 규제를 회피한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정책방향의 상충 등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

- 폐지-재규제의 정책일관성 결여에 의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 증폭
 - 출자총액규제의 폐지, 그리고 재규제는 현정부의 즉흥적이고 비일관적인 기업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사안임.
 - 즉 시장환경을 안정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제공자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구 제도-신 제도간 정책방향 상충으로 기업의 정책순응은 더욱 어려워짐.
 - 舊 制度: 정부는 1994년 출자규제를 25%로 규제를 강화할 당시 소유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 하에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음.
 - 즉, 구 제도하에는 상장법인으로서 내부지분율이 15%(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8%) 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며 주력기업 등 경제력집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회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가 적용배제 되었음.

- 新 制度: 2001년 4월부터 적용되는 신 제도 하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소유분산의 결과) 대주주 기업가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전권을 행사한다는 문제를 들어 25% Rule을 다시 도입하되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규제적용의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방향 및 정책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구 제도와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이 결과 구 제도 하에서 소유분산을 추진하였던 기업의 경우 이제 와서는 적은 지분율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출자 재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

6) 출자 재규제로 예상되는 장·단기 부작용

- 한도 초과분의 단기 해소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 14조원(2000년 4월 기준)에 이르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단기간(1년) 내에 해소해야 함에 따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부담 가중: 30대 그룹 중 한도초과가 없는 그룹은 5개에 불과하며, 2/3 가량(19개 그룹)이 2002년 3월 말까지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1년 내에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와 환율의 불안정적인 변동으로 인해 국내기

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경영성과 개선에 의한 자기자본 증가(순자산액의 증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표 10>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1년 시한 내 해소 전망

한도초과 없음	해소가능	불가능	불확실	합 계
5	5	13	5	29

○ 증시에 미치는 부작용: 2001년 3월 26일 현재, 1년 내에 해소해야 할 30대 그룹의 출자초과분은 14조원 규모이며, 이 중 주식매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해소해야 할 금액이 약 9조원으로 추정되어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세계 경제의 경착륙 등 장기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한 물량 공급은 증시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표 11>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방법

(단위: 억원)

주식매각	유상증자	계열사 매각	기 타	합 계
89,518 (65.5%)	839 (0.6%)	1,773 (1.3%)	44,458 (32.6%)	136,588 (100.0%)

주 1) 2001.3.6 현재 30대 그룹으로 지정된 27개 그룹(대우, 동아, S-oil 제외) 외에 포철, 현대자동차 그룹을 추가함.

2) 기타는 합병, 이익잉여금 등으로 순자산 증가, 적용제외(지주회사 전환 등), 기한내 처분 불가능분 등임.

- 외국 대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 개방체제 하에서 초국적 대기업(TNE)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그룹이라 해도 TNE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규모인데도 출자총액규제와 같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 외환위기 이후 내부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룹의 중핵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핵기업에 대한 국제적 기업인수·합병시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자규제는 경영권 방어 목적 및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목적의 양편에서 국내 대기업이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제한되는 부작용도 감안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잠식 우려

-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왜곡이 여전히 문제인 상황에서 출자규제제도는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4. 개선 과제

1)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

- 대기업을 생산적 관점이 아닌, 지배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지난 3년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대폭적 개선과 함께 투자자의 권리의식 및 행동주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비생산적인 지배목적의 출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견제될 수 있게 됨. 따라서 출자 및 신규투자에 관한 결정은 이제 기업(기업가와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임.

2) 출자규제의 폐지 또는 일본과 같은 규제수위로 정책을 재조정

- 출자규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입논거, 정책효과, 부작용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할 때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무국경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정책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할 것임.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100억엔(자본금) 또는 300억엔(순자산)이 넘는 기업에 대해 100%로 출자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우리도 출자규제를 다시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과 같이 일반규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규제수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표 12> 참조).

<표 12> 출자총액규제의 한·일간 비교

	한 국	일 본
도입	87년 도입, 98년 폐지, 99년 재도입	77년 4월
대상	30대 그룹 계열사(금융회사 제외)	자본금 100억엔 또는 순자산 300억엔 이상 (금융회사 제외)
한도	순자산의 25%	순자산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예외: 지분비율내 증자참여, 순자산 감소, SOC 민간투자 참여 •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딜 통합법인에 출자 - 동업종의 회사 인수(2년내 합병) - 계열사 매각 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타회사 출자 - 물적분할에 의한 신설분할법인 출자 - 임직원이 설립한 분사회사에 출자 - 계열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소유하던 계열사 주식 취득 - 매각대상 회사에 증자참여 • 외국자본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에 출자 • 중소기업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에 30% 미만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물변제나 담보권 행사로 주식취득 - 소유지분에 의한 신주취득 •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분할로 신규법인 주식취득 - 산업발전에 기여(통상적 방법으로 자금조달 불가시) - 대규모 사업이나 해외사업 투자 • 해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에 투융자, 외국정부나 법인에 출자 혹은 장기대부에 출자 - 외국정부나 법인과 합작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회사 - 벤처형 창업기업의 주식취득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순자산액 = 자산총계-부채총계-국고보조금-당해 회사에 대한 타계열사 출자금

3) 차선의 대안으로는, 출자한도 초과분의 단계적 해소 유도

- 증권시장 상황,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순응비용 등을 감안하여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일정기간(예: 3년) 유예함.

- 특히 부채비율을 단기간 내에 200%로 급격히 축소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일시에(1년) 9조원 가량의 주식매각이 수반될 경우 주식시장의 침체는 물론,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여력마저 소진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출자비율 25%는 단계적으로 달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차별적 대기업정책 운용방식에서 탈피

- 출자총액규제는 경제력 (일반)집중을 방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시행되어 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고시제도’에서 연유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 예시: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의 제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금융·보험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부표 1> 참조)
 - 이 밖에 수많은 개별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정·고시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별도의 추가 규제(예: 여신규제, 특정 산업에의 진입규제,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를 적용하고 있음 (<부표 2> 참조).
-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기업 정책의 개념적 기반으로 자리잡은 경제력 (일반)집중 억제논리는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열린 경쟁의 시대적 환경, 기업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지 않음.

⇒ 경쟁촉진 및 시장독과점의 폐해 시정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및 정책 운용의 기본 틀을 시급히 대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과면에서 볼 때, 경제력 일반집중을 억제하겠다는 취지 하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시행한지 15년이 지났으나, 동 정책이 경제력집중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매우 제한적임.
- 반면에 1987~2001년 동안 30대 그룹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그룹이 쇠락한 사실에서 보듯(<표 13> 참조),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해도 자신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또는 여기에 기초한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항상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도 아님.

<표 13> 30대 기업집단 관련 이동지표

구 분	1987-2001	1994-2001
퇴출 그룹	극동건설, 기아, 대우, 대한조선공사, 동아건설, 라이프, 미원, 범양상선, 삼미, 삼환기업, 한보, 한양, 한일합섬, 해태(14개)	극동건설, 기아, 대우, 동아건설, 미원, 벽산, 삼미, 우성건설, 진로, 한라, 한보, 한일, 해태(13개)
자산퇴출률	32.95%	28.80%
매출퇴출률	19.81%	18.94%

-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30대 그룹 등 기업의 규모에 바탕을 둔 차별적 대기업정책 운용방식을 탈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고시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규모 기업집단간 규모의 편차가 크고 상위 4~5대 그룹으로의 경제

력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도기적으로는 이들 그룹에 국한하여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축소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함.

○ 5대 그룹의 비중(CR₅): 1987년 64.7% → 2001년 72.1% (<표 14> 참조)

<표 14> 경제력집중도와 편중도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7		1994		2001	
		자산	매출	자산	매출	자산	매출
경제력 편중도	4대 그룹 집중도(CR ₄)	47.7	60.7	50.3	60.1	50.9	65.0
	5대 그룹 집중도(CR ₅)	52.7	64.7	55.7	66.0	59.2	72.1
	30대 그룹 규모 불균등지수 (HHI)	0.0730	0.1103	0.0794	0.1113	0.0836	0.1290
경제력 집중도		39.1	50.9	37.4	46.6	45.7 ¹⁾	50.9 ²⁾

주: 1), 2)는 1999년 자산·매출집중도임.

자료: 기업경영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기초

<부표 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내용

	절 차	근거	규 제 내 용	시행
1	타회사 출자총액 제한	10조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1999.12
2	채무보증 금지	10조의 2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1998.2
3	채무보증의 해소	10조의 3	기존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1998.2
4	상호출자 금지	9조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1990.1
5	금융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11조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1996.12
6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1조의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내용을 공시	1999.12
7	내부거래 별도 관리	23조 ① 령 36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이 별도 제정되어 운영됨	1999.2
8	기업결합 제한	7조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등 제한	1999.3
9	공인회계사 감사	14조 ⑤	매년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함	1998.2
10	주식회사 규제	8조의 3	지주회사 설립시 채무보증 완전해소	1999.2
11	계좌추적권 대상	50조 5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때 계좌추적권의 발동 대상이 됨	1999.2
12	주식소유 현황 신고	법 13조 ① 령 20조	- 매년 4월말 - 신규 지정의 경우 30일내 - 사유 발생이후 30일내	1996.12
13	채무보증 현황 신고	법 13조 ② 령 20조의 2	- 매년 5월말 - 신규 지정시 60일내	1996.12
14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법 14조의 2 령 3, 20조 ③	- 매월 1회 - 사유 발생이후 30일내	1996.12
15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취득 제한	법 9조 ③	계열 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1990.1
16	관계기관의 자료확인	법 14조의 4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에 주식소유 현황 자료 등의 확인을 요구함	1997.12

<부표 2>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예의 규제내용

	근 거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1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공정거래	계열사는 원사업자로 간주	30
2	고용보험법	노동	고용안정 우선 지원 대상 배제	30
3	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5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6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용배제	30
7	보험업법	"	5대 그룹 진입규제 등	5
8	은행법	"	비상임이사 자격배제 등	5
9	여신전문금융업법	"	진입규제	기업집단
10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사의 계열사와 거래금지	30
11	증권거래법	"	투자자문업 진입규제	기업집단
1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기업집단
13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30
14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	공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30
15	방송법	문화관광	진입규제	30
16	정기간행물 등록법	"	진입 및 겸업규제	기업집단
17	종합유선방송법	"	진입규제	30
18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자원	계열사는 중소기업 배제	30
19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 대금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30
20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	"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이전 배제	30
21	축산업법	농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22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23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24	폐기물관리법	환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2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계열사에 대한 영향평가 대행금지	기업집단

